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1)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 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 1. 제안경위

- 제출자: 서희경 의원 등 13명
- 의안번호: 제5186호

## 2. 제안이유

-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보고 및 평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과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제3조, 제22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기 타
  - 입법예고(2023. 06. 20. ~ 06. 26.): 의견 없음
  -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의 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임. [출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5. 집행기관 의견: 동의

## 6. 검토 의견

### 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sup>2)</sup>을 달성하지 못하여 벌금성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상황이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태임.
-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표준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본 조례안은 11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7조(지원 등)
제2조(정의)	제8조(우선구매)
제3조(적용범위)	제9조(보고 및 평가)
제4조(책무)	제10조(협력관계의 구축)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지도·감독)
제6조(사업 등)	부칙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장애인 고용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2) 법 제28조의2에 따라 2021년: 3.4%이상, 2022~2023년: 3.6% 이상, 2024년 이후: 3.8%이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안에 사용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개념 및 기준 >**

- **근 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 **개 념:**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한다.
- **기 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별표 2>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현 황**(’21. 12월말 기준) : 전국 566개소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성남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성남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 규정함.
- **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안을 따르도록 규정함.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2021. 8. 2.)중에 있으나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만 있어 구체적인 사업 지원 기준이 미흡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사업)**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는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지원)**에서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등 추진을 위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시에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예상되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우선구매)**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
  - 본 안은 시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의무를 강조하여 우선구매율<sup>3)</sup>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보고 및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제6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과 공공기관에 의하여 출자·출연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3)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총 구매액(물품, 용역)의 0.6%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게 장애인 고용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및 표준사업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협력관계의 구축)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지도·감독)에서는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이 목적외 사용 되었거나 사업 중단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주민의 복지증진)라목의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 복지에 관한 시장의 사무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촉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7조 관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추진 시 고정비용(인건비 등) 발생에 대하여서는 소관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예산재정과 의 사전협의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 발표 -

정부는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23),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3, 6개소),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속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22, 11개), 전국 19개 발달훈련 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까지 확대한다('22, 3,850명 → '23, 15,000명, 4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참고 1**    **성남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023년 5월 기준)**

○ 구별 등록장애인 (단위: 명)

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35,979	11,178	10,795	14,006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계	남자	여자	구분	계	남자	여자
계	35,979	20,933	15,046	정신	1,405	695	710
지체	14,799	8,533	6,266	신장	1,681	984	697
시각	3,505	2,143	1,362	심장	115	73	42
청각	6,058	3,259	2,799	호흡기	202	138	64
언어	327	235	92	간	260	173	87
지적	2,919	1,764	1,155	안면	36	24	12
뇌병변	3,549	2,043	1,506	장루·요루	267	159	108
자폐성	780	670	110	뇌전증	76	40	36

○ 장애정도별 (단위 : 명)

구분	계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고
계	35,979	13,562	22,417	
수정구	11,178	3,919	7,259	
중원구	10,795	3,986	6,809	
분당구	14,006	5,657	8,349	

**참고 2****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

○ 성남시 7개소(자회사 4, 일반 3)

사업체명	소재지	인증일자	업종 및 주요생산품	비고
엔에이치엔굿프렌즈(주)	분당구	2016-05-16	소매업(매점)	자회사
장수건강안마센터	분당구	2021-11-08	서비스업(안마원)	일반
네이버핸즈(주)	분당구	2021-01-13	서비스업(사업지원)	자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온	분당구	2022-10-31	교육서비스, 판촉물, 카페	일반
(주)웹젠드림	분당구	2019-04-26	음식점업(카페)	자회사
힐링보장구협동조합	중원구	2021-02-18	제조업(전동휠체어, 충전기, 가구)	일반
인화전자(주)	중원구	2022-10-31	결제단말기, 스마트안전기기	자회사

**참고 3****컨소시엄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황**

○ 전국 2개소

사업체명	소재지	인증일자	업종 및 주요생산품	비고
푸르메여주팜(주)	경기도 여주시	2021-03-23	농업(토마토, 버섯 등 작물재배)	
(주)대한복지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2022-03-15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 참고 4

##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단위:명,천 원)

시설명	시설장	주소	근로 장애인	종사자	생산품목	지원예산	운영주체 (위탁기간)	
계	13개소		340	109		6,306,661		
기타사업장	가나안	윤충진	분당 아탑동	45	18	카트리지	920,411	복가나안복지재단
	장애인복합	홍재근	중원 상대원동	46	15	재활용품 판매	942,169	복밀알복지재단 (19.7.21~2024.7.20)
장애인사업장	셋별재활원	김중수	중원 상대원동	31	11	문구류	549,469	사)셋별공동체
	한가람	백형취	중원 상대원동	33	9	현수막	621,696	사)지체협회 (22.1.1~2026.12.31)
	성남시보호	공석	중원 상대원동	33	10	임가공	584,721	사)지체협회 (22.1.1~2026.12.31)
	사랑-on	강병권	중원 상대원동	35	12	도시락	696,449	복말아튼복지재단
	선한이웃	이상용	분당 아탑동	25	9	압공	526,055	사)빛과 소금
	아지오	이선우	중원 상대원동	16	5	구두제조	280,232	사)구두만드는풍경
	하나테크	길정균	중원 상대원동	11	3	압공	230,342	세종 사회적협동조합
	할렐루야	박경준	중원 상대원동	19	5	저과제빵	358,163	복할렐루야복지재단
	더나은	김민지	중원 상대원동	16	4	데이터 기공업	182,542	사)더나은성남
	비쏘금	백명진	수정 우계동	10	3	아트상품 생산·포장	108,787	비쏘금사회적협동조합
후원	우리꿈터	임주현	분당 서현동	20	5	직업훈련	305,625	복)분당우리복지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8. 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7. 13., 2009. 10. 9., 2022.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 3. 9.>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3., 2011. 3. 9., 2012. 12. 18.>

[시행일: 2022. 7. 12.] 제22조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 7. 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전문개정 2016. 12. 2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별표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제3조제2호 관련)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출자·출연 기관”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